

# 審査關係事務取扱規程改正

## 審査處理의 迅速을 도모코자

特許廳 提供

特許廳은 訓令 第83號(84.6.12)로 審査關係事務取扱規程中 一部規定을 改正하였다.

特許廳의 이번 改正이유는 審査遲延의 主要原因이 되고 있는 意見書등의 提出期間 및 延長回數를 斷縮하고 異議決定의 시기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여 審査處理의 迅速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이다.

그 全文을 紹介한다.

### 審査關係事務取扱規程中改正令

第19條 第1項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國內거주자에 대한 指定期間 및 延長期間은 각각 30日을 超過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回 기간연장 승인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재외자에 대한 指定期間은 2月을, 延長期間은 30日을 超過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回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

第19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期間延長을 승인할 때에는 “차후 기간연장

은 승인하지 않음”이라는 예고문을 기재한다.

第33條 第4項 및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4. 異議決定은 異議申請期間 종료일로부터 30日이 경과하고 出願人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의 답변서 또는 出願人의 재답변서가 제출된 후 2月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.

5. 부적법한 異議申請으로서 그 보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出願人에게 답변서 제출의 機會를 주지 아니하고(異議申請書부분은 出願人에게 송달함)의 신청기간 및 보정기간(30日) 경과후 1月이내에 異議申請을 결정으로서 각하할 수 있다.

### 附 則

①(施行日) 이 規程은 1984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.

②(經過措置) 이訓令 施行當時 기지정된 지정기간과 기승인된 연장기간은 從前의 규정에 의한다.

新・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
<p><b>第19條 (期間延長承認)</b></p> <p>①.....</p> <p>.....</p> <p>1. 국내인에 대한 指定期間 및 1回 延長期間은 각각 30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3回까지 기간연장승인할 수 있다.</p> <p>2. 재외자에 대한 지정기간은 3月을, 1回 연장기간은 각각 1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3回까지 기간연장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②2回이상 기간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예고문을 기재한다.</p> <p>1. 2回 기간연장승인시 “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지정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음”</p> <p>2. 3回 기간연장승인시 “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음”</p>	<p><b>第19條 (期間延長承認)</b></p> <p>①.....</p> <p>.....</p> <p>1. 국내거주자에 대한 지정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回 기간연장승인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2. 재외자에 대한 지정기간은 2月을, 연장기간은 30日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回 기간연장승인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기간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“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음”이라는 예고문을 기재한다.</p>
<p><b>第33條 (異議申請 및 決定)</b></p> <p>①생략</p> <p>②생략</p> <p>③생략</p> <p>(新 設)</p> <p>(新 設)</p>	<p><b>第33條 (異議申請 및 決定)</b></p> <p>①생략</p> <p>②생략</p> <p>③생략</p> <p>④이의결정은 異議申請期間 종료일로부터 30日이 경과하고 出願人の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異議申請人の 답변서 또는 출원인의 재답변서가 제출된 후 2月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부적법한 異議申請으로서 그 보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出願人에게 답변서 提出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(異議申請書 부분은 出願人에게 송달함) 이의신청기간 및 보정기간(30日) 경과후 1月 이내에 異議申請을 결정으로서 각하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①(施行日) 이 規程은 1984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.</p> <p>②(經過措置) 이 訓令 施行當時 기지정된 지정기간과 기승인된 연장기간은 종전의 規程에 의한다.</p>